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7. 2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주택기금과	담당자	·과장 황윤언, 사무관 박현근, 주무관 조승현 ·☎ (044) 201-3337, 3335, 3347
	주택도시보증공사	담당자	·실장 유승중, 팀장 허지행 ·☎ (051) 955-5710, 5721
보도일시		‘19.7.3.(수) 합동브리핑 개최시부터(09:10, 잠정)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.	

전세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세입자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」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특례를 전국으로 확대*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

* 지난 9.13대책에 따라 현재는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서만 적용

-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임차인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(이하 HUG)에서 대신 지급하는 상품입니다.

- 기존 전세금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/2이상 지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했으나, 이번 특례보증 대상 확대*를 통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도 가입이 가능해집니다.

24개월 전	18개월 전	12개월 전	6개월 전
기존 대상		특례 대상	가입불가
전세시작일			전세종료일

< 기존 HUG 전세금반환보증과 특례보증 비교 >

구분	기존	특례
신청기한	· 전세계약 1/2 경과 전	·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
신청요건	· (전세금) 수도권 7억원, 기타 5억원 · 소득요건 없음	· (전세금) 수도권 5억원 , 기타 3억원 · 부부합산 1억원 이하
임대인	· 대위변제 후 구상권 청구 6개월 유예, · 민법상 지연배상금 5%	

- 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는 준비기간을 거쳐 7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며, 1년간 시행 후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.
- HUG 전세금반환보증 관련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 - (가입방법) HUG 영업점 및 홈페이지, 시중은행과 위탁 공인중개사를 통해 가입 가능하며, 9월부터는 모바일 '카카오페이'를 통해서도 가입
 - (보증료) 아파트 연 0.128%, 아파트 외 연 0.154%
 - * 예) 전세보증금 1.5억원 아파트의 경우 -> 2년간 총 38.4만원 납부
 - * 저소득층, 신혼부부, 다자녀, 한부모,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에 대해서는 40~60% 할인
 - *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 도과 후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일이 아닌 전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 산정
- 국토교통부 박선호 차관은 “최근 전세가격이 하락한 지역에서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.”면서, “이번 HUG 전세금반환보증 특례 확대를 통해 서민 임차인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불안한 마음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.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박현근 사무관(☎ 044-201-33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